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연구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鄭洪周*·南相旭**

朴興讚***·李宰奭****

-
- I. 序論
 - II. 支給餘力制度의 概念
 - III. 美國과 日本의 RBC制度
 - IV. EU의 Solvency Margin制度
 - V. 韓國의 支給餘力制度
 - VI. 韓國 支給餘力制度의 國際的 整合性 分析
 - VII. 結 論
-

I. 序論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regulation)는 그 방법, 범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시장에 존재한다. 규제가론 중 하나인 공적이익이론(public interest theories)은 규제를 시장의 실패 및 불완전성의 치유와 시장의 효율성제고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¹⁾ 보험 시장의 규제목적도 보험사의 지급불능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그 규제의 내용은 보험사의 시장활동에 대한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삼성금융연구소 전임연구원.

***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 성심외국어대 교수.

1) Justin L. Brady, Joyce Hall Mellinger, Kenneth N. Scoles Jr. and Karen L. Hamilton,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First Edition, 1995, p.2~30.

시장행위규제(market conduct regulation)와 건전성의 규제인 지급능력규제(solvency regulation)로 분류된다.²⁾

최근 세계금융시장의 규제완화, 중개기능의 약화, 세계화 및 종합화 등의 변화는 보험규제가 지급능력규제와 같은 재무건전성감독(prudence supervision)으로 변화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NAIC는 1970년대 보험감독의 관심을 보험사의 지급능력으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에 대한 조기경보장치로써 IRIS(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와 FAST(Financial Analysis and Solvency Tracking)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1994년에는 보험사의 기업경영에 따른 고유위험의 특성에 기초한 자본을 결정하기 위해 RBC(Risk-Based Capital)를 개발하여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지표로 삼고 있다.

이렇듯 각 국의 보험규제가 지급능력에 그 초점을 두는 이유는 미시적 측면에서 지급불능시 계약자를 보호하고 거시적으로는 보험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EU의 지급여력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1998년 2월 『손해보험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1999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손해보험의 지급여력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손해보험사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케 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BIS비율과 같은 통일된 국제적 건전성평가기준이 보험사에 경우에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국의 지급여력제도의 세부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국내 지급여력제도를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손해보험의 지급여력제도로 범위를 한정하고 지급여력 평가기간, 지급여력 인정항목과 평가방식, 시가평가 등을 주요 논점으로 한다. 또한 EU, 미국, 일본의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각 국의 지급여력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기준 통계수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여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Kathleen Head Ettlinger, Karen L. Hamilton and Gregory Krohm, *State Insurance Regulation*,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1995. p.3~7.

II. 支給餘力制度의 概念

1. 개념

보험사는 계약자들이 위탁한 재산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만기도래, 보험사고의 발생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진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부채)보다 많은 자산을 항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능력을 지급능력(solvency)이라고 한다.³⁾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사의 영업 규모, 업무 형태 등 각각의 위험에 따라 지급능력 이외에도 부채를 초과하여 일정한 규모의 자산(순자산 또는 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때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부채를 충분히 변제하고 남는 순자산을 지급여력(solvency margin)⁴⁾이라고 하며 보험사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기준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지급여력제도라고 한다.⁵⁾

2. 지급여력제도의 필요성 - 이론적 배경

보험사가 지급능력을 초과하여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은 1)파산 비용 (bankruptcy cost)의 존재와 2)미래의 경영위험(변동성)을 대비에 있는바, 양자는 별개의 요소이다.

3) K.H.Ettlinger, K.L.Hamilton, G.Kroh, *State Insurance Regulation*,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1995. p.130. "For an insurance company, solvency is used to describe it's ability to meet financial obligation as they become due ~."

4) EU 지침서 73/239/EEC of July 1973, Text
"~it is necessary that insurance undertakings should possess, over and above technical reserves of a supplementary reserve, to be known as the solvency margin, and represented by free assets, in order to provide against business fluctuation~."

5) 보험업법 제6조의3(채무건전성의 유지).

지급여력제도의 필요성은 우선 보험사의 지급불능으로 회사를 청산하게 될 경우 감독기관의 개입 지체 및 청산과정상 발생하는 자산가치의 감소 및 추가적 비용발생 등 보험사의 부실규모가 확대됨으로써 계약자피해가 커지게 됨으로 감독기관이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 또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 파산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급매하게 됨에 따른 자산손실, 무형의 재산권(영업권 등) 상실, 계약자이탈 및 해약, 변호사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한 감독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사가 어느 시점에서 책임준비금(technical reserve)에 상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론상 지급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부적정성, 거대재해 발생, 투자수익의 하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향후 재무건전성의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충격완화장치(buffer system)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요구되는 지급여력은 경영위험의 크기 (자산 및 부채구조, 손익구조)와 평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급여력제도는 청산비용과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보험사의 미래위험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다. 예컨대, 1)청산비용개념만을 반영하는 제도, 2)계속기업개념만을 반영하는 제도, 3)청산비용개념과 계속기업개념을 모두 반영하는 제도 등으로 지급여력제도는 삼분될 수 있다.

그러나 개념상으로는 청산비용과 계속기업개념을 모두 반영한 지급여력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급여력제도는 더 나아가 청산개념과 계속기업개념을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의 항목산정에 각각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더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산개념을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모두 반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중 하나에만 반영할 수도 있다. 계속기업개념의 반영도 마찬가지이다.

<표 1> 청산개념과 계속기업 개념 차이

구 분	청산 개념	계속기업 개념
개 념	- 청산시 파산비용에 상응하는 지급여력 보유	- 장래 발생할 경영상의 수익, 손실, 위험 등에 대비해 이에 상응하는 순자산 보유
지급여력 금액항목 (분자)	- 자산/부채의 시가평가 적용 · 자산(부동산포함)의 시가평가 · 실현되지 자산의 위험은 평가하지 않음	- 장래에 발생 가능한 수익/손실까지 평가하여 적용 · 자산평가손익, 미실현이익 등의 탄력적 적용 (일본, RBC) · 미래이익 반영(EU, 일본 생보) · 미납입수권자본의 50%반영 (EU)
지급여력 기준금액 항목 (분모)	- 청산후 발생할 추가비용 산정 · 청산절차 비용 · 청산절차 개시 후 3월내에 발생한 보험금1)	- 장래 발생할 모든 경영상의 위험을 산정 · 보험영업위험(보험료, 보험금, 준비금, 예정이율 등) · 자산운용위험(투자, 신용 등) · 기타(경영관리 등)

주 : 1) 보험업법 제140조에 의하면 허가취소 등으로 보험사가 해산 시 그 해산한 날로부터 3월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이런 측면에서 <표 1>의 내용을 기준으로 각 국의 지급여력제도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주로 청산개념을 따르고 있고 계속기업개념은 일부(영업위험)에만 반영하고 있다. 국내제도는 청산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태적으로 청산개념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을 시가평가하고 있고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에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계속기업개념은 지급여력금액 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보험영업위험에서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유럽의 지급여력제도는 최저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제도를 통해 청산비용을 감안하는 한편 계속기업개념은 지급여력금액 산정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영업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유럽제도가 계속기업 개념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셋째, 미국의 RBC제도의 경우 청산개념과 더불어 계속기업개념이 일부 채

택된바, 계속기업 개념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에 있어 영업위험, 자산운용위험, 경영관리위험 등에 광범위하게 반영되는 반면 지급여력금액 산정에는 전혀 채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RBC는 지급여력기준에서만 계속기업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유럽에 비해 보수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일본의 RBC제도는 청산개념과 더불어 계속기업개념이 가장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다. 즉, 미국식 RBC제도와 같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영업위험, 자산운용위험, 경영관리위험 등으로 구분하여 채택하는 한편 지급여력금액항목에서도 유럽과 같이 미래이익 등을 반영하고 있다.

계속기업개념이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제도가 가장 보수적이고 그 다음이 한국, 일본, 유럽 등의 순이다. 즉, 미국은 지급여력비율의 분자에는 계속기업개념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반면 유럽은 동 비율의 분자에 상당히 반영하는 한편 분모에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분모와 분자에 각각 별도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일본은 분모와 분자에 모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지급여력제도가 파산비용의 인식과 미래 경영성과의 변동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때 청산개념과 계속기업개념은 동시에 도입되어야 마땅하고, 계속기업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부정적인 요소(분모 부분)와 아울러 긍정적인 요소(분자 부분)도 더불어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내 지급여력제도가 계속기업개념을 포괄적으로 도입한 일본식제도로의 전환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3. 유사개념과의 구분

보험사의 지급능력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으로서 파산이 있으며, 지급여력과 관련하여서는 납입자본금, 최저자본금이 있다.

지급능력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채(책임준비금, technical reserve)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지급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technical insolvency)은 일반 법인체에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인 파산사유와 유사하다.⁶⁾ 그러나 엄밀히 보면 지급능력은 일반부채는 계산하지 않고 보험계약

자에 대한 채무만을 산정하며 자산도 감독당국이 인정하는 자산만을 포함하여 산출한다는 점에서 파산사유와는 다르다. 현행 우리의 감독제도에서는 지급능력을 직접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의 정의는 파산사유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⁷⁾

납입자본금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험사의 최초 자본금으로, 보험업법은 보험사 납입자본금으로 현재 3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업의 종류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단종 보험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은 자본금으로도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⁸⁾ 보험사의 납입자본금은 영업개시 후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납입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은행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자본금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⁹⁾

영국의 경우 초기 납입자본금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재무적 요건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최저자본금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¹⁰⁾ 미국은 사업개시요건으로서 최소자본금(minimum capital) 이외에 초기 지급여력금액(minimum surplus)으로서 자본금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한다.¹¹⁾

한편 최저자본금이란 보험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순자본)을 말한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에는 최저자본금제도가 없으나, EU의 경우 보험종목별로 보험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보유하여야 할 최저자본금(최소보증기금, minimum guarantee fund)을 절대금액으로 정해 놓고 있다.

6) 파산법 제17조 제1항,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3. 부실금융기관.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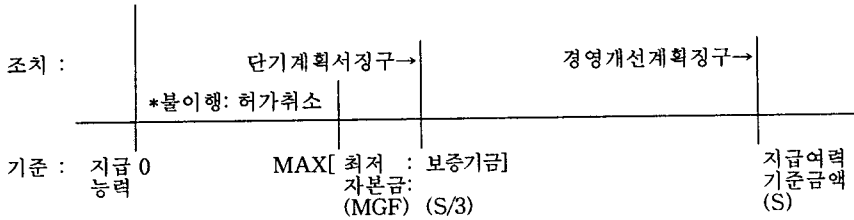
8) 보험업법 시행령 제11조의 4: 화재보험 100억원, 해상보험 150억원, 자동차보험 200억원, 특종보험 100억원, 기타 300억원 이상.

9) 은행법 제9조(최저자본금)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천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이원돈·정봉은·신동호·안철경,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보험개발원, 1999.7.

11) K.H.Ettlinger, K.L.Hamilton, G.Krohm, 전거서 p.15.

<그림 1> 지급여력 유사개념과의 관계(EU제도)



또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금(guarantee fund)으로 하여 실제 지급여력이 최저자본금과 보증기금 중 큰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기 재무계획서를 징구받는데, 보증기금이 종목별로 절대금액으로 정해 놓은 최소보증기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소보증기금이 기준이 된다.

이러한 최저자본금의 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최저수준의 지급여력을 상시 갖추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 대형사보다 소형사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를 최저자본금이라는 절대값으로 통제하여 소형사의 지급능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이다.

III. 美國과 日本의 RBC制度

1. 미국 RBC제도

(1) 미국 RBC제도의 발전과정

미국은 1970년대 이전까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으로 보험료 대비 잉여금 비율(premium-to-surplus ratio)을 사용해 오다 1973년부터 NAIC가 새로 도입한 IRIS을 적용해 왔다. IRIS는 통계적 방법(statistical phase)과 분석적 방법(analytical phase)¹²⁾을 통해 보험사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부실징후보

12) 이 중 분석적 방법(analytical phase)를 FAST(Financial Analysis and Surveillance Tracking)시스템이라 한다. 점수가 높게 책정될수록 미래의 파산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profitability, asset quality, investment yield, affiliate investments,

협사 판별과 조기경보시스템 발동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저축대부은행(Saving and Loans Banks)의 연이은 파산사태로 금융기관의 부실화 문제가 사회적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¹³⁾ 보험사를 포함해 전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의 마련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NAIC는 보험사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시키고 연방차원의 보험사 규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감독체계 확립을 위해 1990년 "Solvency Policy Agenda"를 채택하면서 동 의정서에 RBC(Risk Based Capital)제도의 도입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후 NAIC는 3년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RBC제도를 개발한 후 1993년 12월 RBC모델법(Risk Based Capital for Insurers Model Act)을 제정 발표함으로써 RBC기준이 정식으로 미국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각 주의 보험감독청은 동 모델법을 주보험감독법에 반영하고 1994년 연차보고서부터 RBC제도를 적용하였다.

(2) 미국 RBC제도의 내용

1) RBC제도의 성격과 개념

RBC는 보험사에게 지급불능리스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최저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을 요구하는 자기자본규제의 성격과 특정 보험사가 계약자 또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보험사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결손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감독당국의 행정개입 수준을 강화하는 조기경보장치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RBC 비율이란 보험사가 리스크를 담보할 만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척도이며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RBC \text{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리스크액}}$$

reserves, reinsurance, liquidity, cash flows, leverage의 IRIS ratio에 포함되지 않은 9개 측정치로 구성된다.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State Insurance Regulation, p.145~147 참조.

13) 한국보험학회,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1.2. p.131.

이때 분자의 자기자본은 “총조정자본금(total adjusted capital)”이며, 분모의 리스크액은 리스크총액×50%로 하는데, RBC 계산식은 RBC모델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NAIC가 별도로 만든 지시서(Introduction)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기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자산평가준비금, 임의투자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의 50%, 손해할인 및 손해사정비용준비금 등의 합으로 계산된다.

2) RBC의 평가방법

RBC는 보험사의 경영관련 리스크를 다음과 같은 6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스크를 측정한다.

첫째, 부외거래리스크(off-balance risk, R0)로 보험자회사의 소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보통주, 우선주, 채권), 관계사에 대한 채무보증, 통제불능자산,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과 재보험처리되지 않은 거대재해리스크 등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리스크를 측정한다.

둘째, 확정수익부 유가증권 투자리스크(fixed income risk : R1)로 채권과 같이 수익이 확정된 고정금리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한다.

셋째, 주식투자리스크(equity investment risk : R2) : 주식, 부동산과 같이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자산에 대해 위험등급에 따라 투자금액에 위험계수를 부여하여 반영하여 측정한다.

넷째, 신용리스크(credit risk : R3)로 재보험자의 보험금지급불능리스크를 주로 고려하여 출재보험계약의 준비금 등에 대해 리스크계수를 적용하고 또한 기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섯째, 언더라이팅리스크(underwriting risk : R4, R5)로 이는 준비금리스크 R4와 보험료리스크 R5로 구분되며 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지급준비금 및 손해율에 대한 적정성 즉, 준비금과 보험요율 책정상의 오류위험을 평가한다. 위험계수는 과거 10년간의 실적을 사용하여 보험종목별로 산출하기 때문에 보험종목별로 다르며 평가결과의 수준 및 변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 등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기간이 장기간인 동보험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준비금, 보상방식(保險金請求基準(claim made basis)의 경우 20% 할인) 등에 따라 리스크를 반영한다.

보험사의 RBC총액은 최초안에서는 각 리스크를 단순 합산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보험사에게 과대 부담이 되고 리스크간 상호관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리스크간 공분산 조정을 하도록 변형되어 최종적으로 다음의 공식이 채택되었다.

$$RBC = \frac{R_0 + \sqrt{R_1^2 + R_2^2 + R_3^2 + R_4^2 + R_5^2}}{2}$$

미국 손해보험 RBC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자산위험부분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60%가 부채부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¹⁴⁾

<표 2> 미국 RBC의 항목별 비중

항목	R ₀	R ₁	R ₂	R ₃	R ₄	R ₅
비중	32%	2%	7%	0.1%	28%	31%

자료 : 정홍주, 「손해보험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한국보험학회, 2001. 5.11

2. 일본의 RBC제도

(1) 제도 도입

일본의 지급여력제도는 1995년 일본 보험업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어 1996년 4월 1일부로 전면 도입되었다. 지급여력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일본 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으로 단순히 책임준비금의 적립 충실도만을 점검해 왔을 뿐 보험사 경영전반에 걸친 경영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보험사 평가지표에 대한 국제통합성 요구와 계약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규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자, 일본 당국은 보험업법 제130조(건전성 기준)에 지급여력에 대한 기준 설정 규정을 명문화시켜 지급여력비율 규제를 도입하였다.¹⁵⁾

14) 정홍주, 손해보험 재무건전성규제 개선방안, 한국보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5.11, p.11~12

15) 深尾 光洋, 金融不況の實證分析, pp.210~212, 日本經濟新聞社, 2000.10.

현재 지급여력비율 관련 세부내용은 금융청고시(제19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1996년 2월 대장성고시(제50호) 이래 지급여력 인정항목 및 비율 조정 등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해 왔다.

(2)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

일본 지급여력제도는 캐나다 MCCSR(Minimum Continuing Capital and Surplus Requirement)방식과 미국 RBC기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¹⁶⁾ 그러나 일본의 지급여력제도는 지급여력 산출형태나 리스크 총액 산출방법 등 지급여력비율 산정방식의 기본형태만 미국 RBC방식과 유사할 뿐 지급여력항목이나 리스크계수 등에 있어서는 독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일본 당국이 인정하는 지급여력 항목(보험업법 시행규칙 제86조, 금융청고시 제19호)은 크게 11개로 분류된다. 이 중 국내 지급여력과 비교해 특이한 항목은 가격변동준비금, 주식 및 토지에 대한 미실현이익 항목, 장래이익, 세효과상당액 등이다. 특히 임의적립금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법인세 절감으로 발생한 재원, 즉 세효과상당액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주식미실현손익의 지급여력 인정분 계산에 있어 평가손은 100% 지급여력에 반영시키는 반면 평가익의 경우 90%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식평가익의 일정부분을 가격변동준비금으로 적립시켜 급격한 주가하락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 준비금을 지급여력 항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보험사로 하여금 동 준비금 적립을 유인하고 있는 것도 독특한 점이다.

16) 山下 友信, 日本におけるソルベンシー・マージン規制とその問題點, p.9, 한국보험학회 발표자료, 2001.5.11

<표 3> 지급여력 항목 내역

지급여력 항목	비 고
① 자본합계액	· 자본계정 총액에서 처분잉여금을 차감한 금액
② 가격변동준비금	· 가격변동이 현저한 주식 등에 대해 장래 가격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으로, 보험업법 제 11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③ 위험준비금	· 대지진 등 이상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손실에 대비한 준비금
④ 일반대손충당금	· 채권상각특별계정 및 특정해외채권 충당금 계정은 제외
⑤ 주식미실현이익	· (주식시가-장부가)×90% 단, 주식시가총액이 장부가에 미달할 경우 손실액 100% 반영
⑥ 토지미실현이익	· (토지시가-장부가)×85% 단, 토지시가총액이 장부가에 미달할 경우 손실액 100% 반영
⑦ 초과 적립 해약환급금액	· 실제 적립한 책임준비금에서 전기질멜식 책임준비금액을 차감한 금액
⑧ 미할당 배당 준비금액	· 계약자배당적립금 총액에서 기할당배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명보험에만 한함.
⑨ 장래이익	· 과거 5개사업년도 배당준비금 전입액의 평균치 금액과 최근 사업년도 배당준비금 전입액 중 작은 금액으로 생보사에만 적용
⑩ 세효과상당액	· 임의적립금 이입 등을 통해 리스크 대응재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
⑪ 후순위채권	· 상환기한이 5년 이상인 채권에 한하고, 잔존기간 5년째부터 매년 채권가액의 20/100씩을 누적 감가

자료 : 일본 보험업법시행규칙 제86조, 금융청고시 제19호 제1조, 제1조의 2.

한편 분모 부분인 리스크 합계액은 보험사의 경영지표와 관련하여 보험리스크(R1), 예정이율리스크(R2), 자산운용리스크(R3), 경영관리리스크(R4), 일반보험리스크(R5), 거대재해리스크(R6)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산출된다.

$$\text{손보사 리스크 합계액} = [(R_5)^2 + (R_2 + R_3)^2]^{1/2} + R_4 + R_6$$

우선 보험리스크(R1) 산출시 일본 지급여력제도는 손해보험종목별로 각각 다른 리스크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리스크대상금액 기준에 있어서도 EU식과 같이 보험료기준과 보험금기준으로 나누어 양자의 금액중 큰 값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종목별 리스크계수의 차등 적용은 보험종목에 따라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이한 데다 발생손실액 규모 또한 다르기 때문에 지급여력비를

산정시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일본 지급여력제도가 미국 RBC와 다른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손보사에 예정이율리스크(R2)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손보사의 경우 장기보험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이율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적립형보험 비중이 약 30%를 점하고 있는 일본 손보사에게는 예정이율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발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자산운용리스크(R3)는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자산가치가 감소해 장래 보험금 지급소요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리스크로, 이에 가격변동리스크, 신용리스크, 부외거래리스크, 관련회사리스크 등이 포함된다. 동 리스크의 계량화를 위해 일본 당국은 가격변동리스크에 대해서는 투자자산별로, 신용리스크는 여신대상 등급별로 구분해 각기 다른 계수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위험도에 따라 -5%~100%, -100%~10% 등으로 세분해 리스크계수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급여력비율에 반영하기 위해 경영관리리스크(R4)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운영전반에 걸쳐 리스크가 높을 경우 경영관리면에서의 위험도 비례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것이다.¹⁷⁾ 경영관리리스크 상당액은 보험리스크, 예정이율리스크, 자산운용리스크의 합계액에 대해 당기손실 발생사의 경우는 3%, 당기이익 실현 회사는 2%의 리스크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3) 평가 및 최근 개정내용

일본 지급여력비율은 산출방법과 활용방법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일본 지급여력비율의 최대 문제점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기준을 마련을 위해 도입한 지급여력비율이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⁸⁾

17) 한국보험학회, 전제서, p.145.

18) 예컨대, 지난해 파산한 4개 생보사중 大正生命을 제외한 나머지 千代田生命, 協榮生命, 第百生命의 직전 사업년도 지급여력비율이 모두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인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 지급여력비율의 과대 계산은 일본 10대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미국 RBC 방식으로 수정해 산정하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00년 3월말 기준 일본 10대 생보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이러한 현상은 산출방법상의 문제로 우선 전체 자산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지 않음에 따라 보유자산의 실제가치가 과대 평가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보유자산의 미실현손익을 전액 반영하면 실질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를 산정시에는 미실현이익이 전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만으로는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동안 일본 지급여력 산정기준은 주식(이익 90%, 손실 100%)과 토지(이익 85%, 손실100%)에 한해 미실현손익을 반영하였을 뿐 채권, 비상장주식, 외국유가증권 등 상장주식을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의 미실현손익을 반영하지 않았다.

일본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2001년 3월 31일 채권 등에 대한 시가평가제 도입 등 지급여력비율 산정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급여력비율 산정방법의 개선에 있어 일본 금융청은 그 간 시가회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상장주식, 국내채권, 외국증권의 평가손익을 포함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가격변동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대상 가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가격변동리스크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국내채권에 대해 금년 회계년도부터 가격변동리스크 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험사들은 보유 국내채권을 시가평가하고 해당 가격변동리스크를 산출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표 4> 최근 일본 지급여력비율기준 개정 내용(2001. 3. 31)

(1)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반영 (분자)
· 시가회계에 입각해 비상장주식, 국내채권, 외국증권에 대한 미실현손익 반영
(2) 장래이익 제한 (분자)
· 장래이익 산입 축소(100%→50%)
(3) 그룹내 은행 등과의 double gearing 불인정 (분자)
· 연결회계 대상 은행 등의 후순위채권을 의도적으로 보유할 경우 지급여력 불인정
(4) 시가평가액에 기초한 리스크액 산정 (분모)
· 가격변동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대상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취득가액→시가)
(5) 채권가격변동리스크 신설 (분모)
· 국내채권에 대한 가격변동리스크 도입

자료 : 일본 금융청(www.fsa.go.jp)

854.7%이나, 미국 RBC 방식으로 수정 계산하면 동 비율은 314.7%로 하락한다.

IV. EU의 Solvency Margin制度

1. EU 지급여력제도의 발전과정

1946년 보험사법을 제정하여 지급여력(solvency margin)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제도가 현재의 EU 지급여력제도의 기초가 되었다.¹⁹⁾ 동 법은 손해보험에 한하여 지급여력의 보유를 의무화하였고, 그 후 EU는 1973년 제1차 보험지침에 의한 지급여력제도를 회원국가별로 EU 손보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EU지침을 1978년 보험사법에 일부 반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The Insurance Company Regulation 1994에 반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EU의 지급여력제도는 각 회원국간 차이가 없이 발전하여 왔다.

또한 영국은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시행되는 2001년 7월부터 영국내의 단일의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 :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출범하여 11,000개의 금융기관(증권거래소, 어음교환소 포함)을 규제하게 된다. 금융기관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영역별 감독을 하는 한편 또한 위험기준감독(risk based regulation)을 도입하여 집중적인 감독 시스템을 통한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기하고 대형 보험사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게 된다.²⁰⁾

2. EU 지급여력제도의 내용

(1) EU의 지급여력제도 구조

EU의 지급여력제도는 최소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과 지급여력

19) 한국보험학회, 전제서, p.114.

20) FSA, Building the New Regulator Progress Report 1, FSA website <http://www.fsa.gov.uk>, 2000.12

(solvency margin)등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EU 손해보험 1차지침의 제 16조에 지급여력의 정의로 자산에서 예측 가능한 부채와 모든 무형의 항목을 제외한 것으로²¹⁾ 되어 있다. 또한 지급여력 인정항목으로 납입자본금, 미납입 수권자본금의 50%, 법정준비금의 초과분, 이익유보금, 은닉준비금의 합으로 규정하여 계속기업 개념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최소보증기금은 보험종목별로 정하여 보험사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최저수준의 지급여력을 상시 갖추도록 하고 있다.

(2) EU의 지급여력 산정방법

보험사규칙(The Insurance Company Regulations 1994) 제17조와 동 규칙 Schedule 3 및 4에서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 산출기준을 수입보험료기준(premium basis) 및 보험금기준(claim basis)으로 각각 계산하여 이 중 큰 금액이상의 순자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손실빈도가 매우 낮은 종목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보험료기준 (premium basis)

원수보험료와 수재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해약환급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text{ECU 1,000만까지의 금액} \times 18\% + \text{ECU 1,000만 초과금액} \times 16\% = A$$

$$\text{기준금액} = A \times C/B$$

$$\text{단, } B = \text{지급보험금} + \text{이월발생손해액} - \text{발생손해액환입}$$

$$C = B - \text{재보험회수금}$$

$$C/B \geq 50\%$$

21) "the assets of the undertaking, free of all foreseeable liabilities, less any intangible items"

2) 보험금기준 (claim basis)

보험금기준은 대상 회계년도 말에 보험사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총발생보험금(재보험회수금 공제전)의 1/3에 대해 다음의 계산을 한다.

$$\text{ECU 700만까지의 금액} \times 26\% + \text{ECU 700만 초과금액} \times 23\% = D$$

$$\text{기준금액} = D \times C/B$$

$$\text{단, } B = \text{지급보험금} + \text{이월발생손해액} - \text{발생손해액환입}$$

$$C = B - \text{재보험회수금}$$

$$C/B \geq 50\%$$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의 최저지급여력은 일반손해보험과 평가방식은 동일하나 각 방법의 반영비율이 일반손해보험의 1/3수준으로 보험료기준의 적용비율은 6%, 보험금기준의 적용비율은 8.66%이다.

3) 지급여력 산정기준

EU 지급여력제도 개정안(2000)에 따르면 해상보험, 항공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해서도 지급여력기준비율을 50% 인상할 예정으로 있다.²²⁾

또한 사업규모와 비례적 관계에 있는 지급여력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정한도까지 높은 비율(보험료기준 18%, 보험금기준 26%)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16%와 23%)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기준이 되는 보험료 또는 보험금 역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험금은 직전 3개년도치의 1/3을 적용한다.

22) EU(2000). Proposal for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uncil Directive 79/239/EEC ... Article 16a.4.

3. EU 지급여력에 대한 개정안(2000)²³⁾

EU의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2000년 10월 30일 유럽연합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지급여력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지침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생보사 및 손보사의 지급여력 계산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과 아울러 금융, 보험산업의 통합시장형성과 공개적이고 안정적인 민간고객시장의 보장, 감독과 관련된 규정 및 감독의 현실화 등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 EU회원국은 유럽연합의 지침에 의한 지급여력 계산을 위한 규정보다 더욱 강화된 특별위험을 고려한 규정을 들 수 있다.

- 최소유지자본(최저보증기금)의 상향조정 및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 보험료/손해금액의 산정을 위한 판단의 기준치 상향조정

* 손해보험의 경우 최저보증기금수를 4개에서 2개로 축소

* 규정의 간소화 등

- 보험가입자의 이해관계가 위험에 처한 경우 감독관청이 빠른 시일 내에 개입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강화

- 해상운송보험, 항공운송보험 및 일반책임보험 등 다양한 위험의 특징이 내포된 특정손해보험에는 상향된 지급여력의 요구조건의 도입

23)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oposes to strengthen protectio of policy-holders by amending solvency margin requirements, <http://eropia.eu.int>, 2000. 10. 30.

V. 韓國의 支給餘力制度

1. 한국 지급여력제도의 발전과정

국내 손해보험사 재무건전성확보를 위한 최초의 지급능력제도로는 1986년 3월에 제정된 『손해보험사 보험계약자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을 들 수 있다.

동 규정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잉여금의 500% 이내에서 보험료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보유보험료비율 500%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²⁴⁾

현재의 손해보험사 지급능력제도는 1998년 2월 EU의 지급여력제도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제정된 『손해보험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그 후 2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험업법 제6조의3(재무건전성의 유지)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토록 되어 있다. 또한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3(재무건전성 기준)에서는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여력금액이 보험사가 보유하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한국 지급여력제도의 내용

현재 손해보험의 지급여력제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999년 6월 국제적 정합성 제고차원에서 EU방식을 준용해 종전 지급여력제도를 대폭 강화한 『손해보험사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2차 개정 내용에 따르고 있다.²⁵⁾

24) 동 비율은 1987년도에 900%에서 매년 100%씩 감소되어 1991년 이후 500%로 변경된 것이다.

25) 보험업법시행령 제12조의3(재무건전성기준),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지급여력금액), 제57조(지급여력기준금액), 제58조(지급여력비율의 보고) 참조.

(1) 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을 합하여 산출되는데, 일반보험의 경우 지급여력기준을 일반보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험료기준 산출액과 보험금기준 산출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²⁶⁾

보험료기준 산출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보험료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보험금기준 산출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보험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료기준비율은 17.8%이며, 보험금기준비율은 25.2%이다.²⁷⁾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는 지급여력기준을 장기보험 책임준비금의 1%에서 4%로 강화하고,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은 장기보험의 보유 위험보험료와 발생손해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책임준비금 산정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표 5> 지급여력기준

지급여력기준 = 일반보험 지급여력기준 + 장기보험 지급여력기준	
일반보험 지급여력기준 (다음 중 큰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보유보험료 × 보험료기준비율(17.8%) · 3년평균 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비율(25.2%)
장기보험 지급여력기준 (다음 중 큰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1년간 보유위험보험료 × 보험료기준비율(17.8%) · 장기보험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4% + 장기보험 3년평균 발생손해액 × 보험금기준비율(25.2%)

26) 지급능력규정 제정 당시에는 지급여력기준이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한편 일반보험의 보험종목별 지급여력비율은 다음과 같다.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기타특종
보험료(%)	20.8	14.9	18.2	14.9	6.6
보험금(%)	39.4	20.6	24.3	20.6	10.1

27) 대형보험사와 소형보험사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험료 및 보험금기준비율을 차등화하는 Sliding Scale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비율을 적용한다.

(2) 지급여력항목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여력을 구성하는 합산항목 중 2차 개정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정상, 요주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하므로 동 채권에 적용한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전액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계 규정 개정에 따라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 자본조정항목이 지급여력 인정항목으로 산입되었으며²⁸⁾, 보험업법 제97조 준비금은 지급여력 합산항목에서 삭제되었다.

<표 6> 지급여력 항목

합 산 항 목	가. 자본금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용된 대손충당금 바. 후순위차입금. 후순위차입금은 납입자본금 범위내에서 산입.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씩 차감 사.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아.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생보) 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한 금액(생보) 차. 비상위험준비금(손보) 카. 저축성보험료 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된 금액(손보)
차 감 항 목	가. 미상각 신계약비 나. 영업권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28) 지급여력은 현재 시점의 정확한 순자본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기자본을 조정하는 성격인 자본조정항목을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본조정항목 중 장기적인 투자손익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은행, 증권에서도 자기자본항목에 산입하듯이 지급여력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급여력 평가기간 및 제재조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시행되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이후(1998년 6월, 1차개정)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매분기로 단축되었다.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매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년도말에는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시에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제재조치가 있다.²⁹⁾

<표 7>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제재조치

지급여력비율	제재조치
100% 초과	정상
50~100%	경영개선권고
0~50%	경영개선요구
0% 미만	경영개선명령

VI. 韓國 支給餘力制度의 國際的 整合性 分析

1. 지급여력 평가기간의 문제

미국, 일본, EU는 1년단위로 지급여력평가를 실시하나 우리는 분기별로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사업년도말과 동일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급여력기준 평가모형의 원리와의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모형은 총손해액과 총사업비의 합이 총보험료와 지급여력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즉, 지급불능이 되는) 확률이 일정비율(현행기준은 0.1%를 전제로 산출)이 되는 지급여력 요구금액을 계산하는 기본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³⁰⁾

29) 보험업감독규정(적기시정조치) 제66조~제72조 참조.

즉, 파산확률이 α 라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P_r(P + S(E + L)) \leq \alpha$$

이를 다시 표현하면

$$P_r \left[\frac{L}{P} - \left(1 - \frac{E}{P}\right) \gg \frac{S}{P} \right] \leq \alpha$$

이며 $\frac{L}{P}$ 은 실제손해율로서 γ 로 표시하고 $1 - \frac{E}{P}$ 를 예정손해율로 하여 γ_p 라 하면 다음과 같은 파산확률식을 얻는다.

$$P_r[\gamma - \gamma_p \gg f] \leq \alpha$$

여기서 $f = \frac{S}{P}$ 로서 최저지급여력(기준비율)을 표시하게 된다.

위의 좌변과 우변을 일치시키는 S의 값을 S^* (최저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하면 파산확률(α)을 일정하게 하는 S^* 는 P에 따라 변화되는 함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급여력 평가시 적용되는 보험료(P)는 평가기간에 맞추어 분기별 보험료가 적용되고 그에 상응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S^*)도 조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분기별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분기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평가시기 직전 1년간의 실적을 적용함으로써 분기별 보험료에 상응하는 위험이 4번이나 반복하여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약 상기의 파산 확률식에서 P의 값을 분기별로 적용한다면 S^* 도 그에 상응하여 축소되어야 한다.

다만, 분기별 파산확률(α')이 연간 파산확률(α)과 같아지도록 α' 를 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S^* 의 값은 P의 축소비율만큼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지급여력 산출기준이 되는 연간파산확률(α)을 1%라 하면 동일한 수준의 분기별 파산확률(α')은 약 0.25%가 된다.

$$(1 - \alpha')^4 = 1 - \alpha = 0.99$$

이때 정규분포의 z값은 2.33에서 2.81이 되어 분기별 최저지급여력기준금액(S^*)의 수준은 보험료 감소효과(중전의 1/4 수준으로)³¹⁾와 파산확률 축소효과(중전의 2.81/2.33 수준으로)를 반영하여 연도별 최저지급여력기준금액(S^*)의

30) 조병진,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개정내용, 손해보험, 1999.7, p.51.

31) 분기별 보험료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의 건전성기준인 BIS와 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보험산업에는 존재하지 않고 각 국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자국의 현실을 고려한 평가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 특유의 사업적 특성인 신탁재산인 보험료(P)에 대한 평균변제기간(보험기간)이 은행의 채무변제기간(2001년 6월 현재 은행예금의 45%가 만기 6월 미만의 단기성예금임)보다 장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출도 우리 손해 보험산업의 현실과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지급여력의 평가는 1년 단위로 하여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 또는 반기별 평가는 상시감독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 보험사의 불충분한 재무건전성을 인식하고 감독당국의 조기대응을 통한 계약자 손실 최소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지급여력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보험의 경우 대부분 보험기간이 1년(P의 기간평균)으로서 보험사는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을 사업년도와 일치하는 1년을 기본단위로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없이 지급여력의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은 적절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지급여력 인정항목과 평가방식

현재 미국 RBC방식이나 EU식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험사의 지급여력 인정항목을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지급여력 산출시점에서 보험사가 계속적으로 보험업을 영위해 나간다는 인식 하에 해당사의 미래이윤(future profit) 등을 지급여력항목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EU에서는 자본금이 25% 이상 납입된 보험사의 경우 정관상에 기재된 미납입수권자본금의 50%를 지급여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는 보험사 주주들의 잠재적 증자자금인 미납입수권자본금이 향후 필요 시 지급여력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보는 계속기업의 개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RBC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장래이익을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임의적립금 이입을 통해 리스크 대응재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을 세효과상당액으로 하여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것도 계속기업 개념을 밑바탕에 두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청산개념(liquidation)으로서 지급여력 산출시 보험사가 청산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항목만을 전적으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청산개념을 바탕으로 지급여력 인정폭이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나 미국 RBC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비해 극히 보수적으로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시가평가 문제

EU식 제도와 미국 RBC 방식간의 차이는 투자리스크의 반영여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여력제도는 EU식을 채택하면서 주식시가평가를 시행함으로써 투자리스크를 반영시키고 있다. 또한 보유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평가손익을 지급여력 산정시 전액 반영시키고 있다. 보험사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원칙은 현재 지급여력 계산시 자산운용리스크를 반영하지 않는 EU식을 제외하고 미국 RBC방식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그 동안 주식과 토지에 한해 시가평가를 해 온 일본의 경우도 금년 회계년도부터 채권과 외국증권,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시가평가제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산의 시가평가는 보험사가 지니고 있는 투자리스크를 지급여력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적절한 지급여력 평가를 가능케 하는 데다 보험사로 하여금 투자위험에 대한 예비 재원을 충당시켜 재무건전성 유지를 도모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식시가평가가 자칫 보험사의 보유지급여력 평가금액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주식 등 투자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는 보험사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국내 주식시가평가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평가의 발생시는 보험사 스스로 유사시에 대비해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자산가치의 미래변동위험을 지급여력 산정에 반영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

(1) RBC제도와 EU 지급여력제도

지급여력규제제도는 크게 미국, 일본식의 위험기준자본금(Risk Based Capital)제도와 유럽식 지급여력(Solvency Margin)제도로 구분된다. 지급여력제도가 보험사의 보유위험에 대한 충격흡수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라면 보험사의 보유위험을 과학적 합리성, 국제적 정합성 등을 충족하며 측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표 8> 제도별 보험사 보유위험의 측정

구분	지급여력(Solvency Margin)제도		위험기준자본금(RBC)제도	
	우리나라	EU 제도	미국식	일본식
보험 영업 위험	-일반보험:다음 중 큰 값 · 1년 보유보험료×17.8% · 3년 평균순해액×25.2% -장기보험 · 금리:책임준비금×4% · 위험:일반보험과 동일	-일반보험:다음 중 큰 값 · 1년 보유보험료×[18%, 16%] · 3년 평균보험금×[26%, 23%] * 규모별 단계적 적용 * 보험종목별 차등적용 -장기보험 : 없음	R ₄ : 준비금 R ₅ : 보험료	R ₁ : 일반보험 R ₂ : 거대재해 R ₃ : 예정이율
자산 운용 위험	없음	없음	R ₀ :부의 R ₁ :확정수익자산 R ₂ :주식투자 R ₃ :신용	R ₄ : 자산운용
기타	없음	없음		R ₅ : 경영관리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위험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한 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위험(underwriting risk)으로서 보험료, 보험금, 준비금, 예정이율, 등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보험사가 보유하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투자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고 경영관리위험 등 기타의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식 RBC제도가 자산운용 등을 포함한 보험사의 노출 위험을 정교하게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제도로서 이야기되지만 EU집행위원회는 미국식 RBC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현행 EU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식 지급여력제도가 지급여력 산출모형이 단순하고 제도 운영이 용이하며 현재까지도 운영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럽다는 점에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다.³²⁾

(2) 한국 지급여력제도와 EU 지급여력제도

현행 국내 지급여력제도는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준용하고 있어 그 골격은 EU식 제도와 동일하나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EU식 제도는 손해보험을 민간의료보험과 기타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위험도가 낮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기타 손해보험의 1/3 수준의 최소 지급여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EU는 지급여력제도 개정안을 통해 위험도별로 보다 세분화된 체제(손해보험의 경우 해상, 화재, 보증보험 등은 50% 할증)로 확대해 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RBC제도에서도 손해보험을 7가지 종목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도 위험계수는 보험종목별로 과거 10년간의 실적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국내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는 장기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손해보험상품에 대해 별도의 구분없이 EU식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17.8/25.2%)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둘째, 장기보험의 경우 EU의 생명보험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고는 있으나, EU의 경우 전통형 생명보험과 연금(금리보장형), 손해보험성(상해)보험, 신종 생명보험(금리미보장형)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비율을 적용³³⁾ 하고

32) 조병진, 전제논문, p.55.

33) - 전통형 상품 : 책임준비금의 4% + 위험보험료의 0.3%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보험에 있어 생명보험의 기준을 중 가장 높은 4%를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사가 금리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earned premium reserve)과 지급준비금(reserves for outstanding claims) 그리고 계약자가 금리위험을 부담하는 금리연동형상품에 대해서도 모두 4%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셋째, 현재 EU는 보험종목별로 최소보증기금(minimum guarantee fund)을 절대금액으로 정해놓고 지급여력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보증기금: guarantee fund)과의 큰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단기계획서를 징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최소보증기금제도가 없으며, 다만 지급여력비율이 50%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보험종목별 단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는 데다 자본금도 각각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보험종목별 위험에 상응하는 최소자본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유럽은 보험금기준을 3년간 평균 총보험금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년간 평균 발생손해액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금기준이 적용될 경우는 손해가 특히 높을 경우 또는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인데 이 경우 준비금 적립이 충실하다면 발생손해액 기준에 비하여 보험금기준이 보험사의 위험을 보다 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VII. 結 論

금융산업의 국제화, 개방화, 자유화 추세 속에서 과거 사전규제중심의 감독 정책은 가격, 상품, 모집제도,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강조되는 한편, 경쟁심화로 인한 보험사의

- 손해보험성 생명보험 : 손해보험 기준율[18%/16%] 적용
 - 투자형상품 (금리연동형) :
 · 투자위험과 비용위험을 보험사가 모두 부담 → 책임준비금의 4%
 · 투자위험을 계약자가 부담, 보험사는 비용위험만을 부담 → 책임준비금의 1%.

34) 발생손해액과 총보험금의 차이는 지급준비금의 적립/환입의 차이인데 지급준비금 적립의 충실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부실위험으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사 자본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의 지급여력 확보가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요구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너무 과다할 경우 자본비용(예: 주주 자본에 대한 보상)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보험요율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계약자에게 부담이 증가된다. 또한 보험산업에 대한 진출욕구와 투자를 억제하게 되며(신규진입장벽으로 기존사에게 유리한 경쟁우위를 제공하게 됨),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의 과소적립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지급여력제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의 지급여력제도는 EU의 지급여력제도를 이론적 배경으로 도입하였으나 그 수준은 지급여력항목, 기준 산정 등에서 보다 엄격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내 지급여력 인정항목은 청산시의 보험사 가치(순자산)를 평가하는 기준 위주로 되어 있어 EU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미납입수권자본금이나 장래이익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장래에 변동되는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채권시장의 불안정성에 기인하여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제보다 변동이 크게 나타남에도 이를 조정하여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현행 EU제도는 손해보험을 민간의료보험과 기타 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위험도가 낮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기타 손해보험의 1/3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종목별로 각기 다른 최저자본금(최소보증기금, minimum guarantee fund)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 손해보험 전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지급여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이 과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 대수의 법칙 및 안정적 손해율로 인해 지급여력수준을 낮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파산확률 0.1%로 유럽이나 미국의 실제 경험값 보다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최근 경영실적이 양호하여 파산확률 모형에 기초한 지급여력기준의 요구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험가격 인상 억제시기의 통계에 기초한 지급여력 수준을 적용하여 필요 이상의 높은 지급여력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현행 제도는 지급여력비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보험사의

단계적 퇴출여부가 결정되고 있는데 평가시기를 다른 나라와 달리 분기단위로 한다면 위험의 평가기간도 분기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총비용과 총수입(보험료)의 비교에 따른 파산확률에서 지급여력기준을 산정하는 모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급여력의 산정도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위험인 분기별 보험료를 반영하여 지급여력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보험사의 위험관리가 사업년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론과 현실에 충실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보유하는 자산운용위험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준비금 적정성위험, 재보험위험, 기타 거대재해위험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RBC제도를 즉시 도입하여 시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험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보험산업은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성장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세계화, 자유화의 변화 속에서 책임경영으로 체질변화를 하기도 전에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맞이하여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본의 적정성을 요구받았다.

이제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외국제도의 내용과 배경원리, 동 제도가 적용되는 시장현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우리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국내 자료와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보험산업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급여력제도는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였음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므로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적정하게 적립하는지 판단하고, 국내 손해보험의 장기보험(개인연금 포함)의 자산운용상의 위험 및 이연처리되는 사업비 과다 집행의 위험을 적절히 사전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여력제도를 위험도에 따라 적정하게 세분화하고 부실원인에 대한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다면 기존 보험사로 하여금 수익성이 저조하고 위험도가 높은 보험종목을 정리하게 하여 보험사 스스로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이기형 · 이준섭 · 김병준,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3.
- 이원돈 · 정봉은 · 신동호 · 안철경,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보험개발원, 1999.7.
- 정홍주, 손해보험 재무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지급여력을 중심으로, 한국보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5.11.
- 조병진,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 개정내용, 손해보험, 1999.7.
- 황선영 · 박철규 · 오창수 · 정홍주, 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비율의 통계학적 적정성,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2001.4.
- 한국보험학회,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1.2.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mission proposes to strengthen protectio of policyholders by amending solvency margin requirements, <http://eropia.eu.int>, 2000.10.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Council Directive 79/239/EEC, 2000.
- FSA, Building the New Regulator Progress Report 1, 2000.12.
- Hamilton, *The Regulation of Insurance*,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First Edition, 1995.
- Justin L. Brady, Joyce Hall Mellinger, Kenneth N. Scoles Jr. and Karen L. *Insurance Regulation*,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1995.
- Kathleen Head Ettliger, Karen L. Hamilton and Gregory Krohm, State OECD, Insurance Regulation and Supervision in Asia, 1999.
- Swiss Re., Solvency of non-life insurers : Balancing security and profitability expectations, Sigma No. 1/2000
- 山下 友信, 日本におけるソルベンシー・マージン規制とその問題點, 한국보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5.11.
- 深尾 光洋, 金融不況の實證分析, 日本經濟新聞社, 2000.1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 Focusing on Non-Life Insurance

Jung, Hong Joo · Nam, Sang Wook
Park, Heung Chan · Lee, Jae Seok

This paper aims to find a reasonable solvency margin system in non-life insurance industry and also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in Korea.

The current solvency margin system in Korea, based on EU's solvency margin model, was introduced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 solvency requirement is not based on non-life insurer's risk, but simply on written premiums. The current solvency margin for general insurance, such as fire, marine, and automobile insurance, is determined by the greater between a premium-based amount and a claim-based amount, where the premium-based solvency margin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net written premium for the preceding year by the premium based solvency margin ratio. Also, the amount of solvency margin for long term insurance is set at 4% of the policy reserve of the long term insurance. Still, there exist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current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in Korea and EU's model.

This paper focuses on the rationality of the solvency margin regulation system, and compares the current system in Korea with EU's model and the RBC(Risk Based Capital) system in U.S. and Jap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more specific and reasonable solvency margin system to be developed in Korea.

Key Words : Insurance, Solvency margin, RBC
